

제안 번호	제 83 호
의결 년월일	1996. . . (제 회)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6. 10 .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제출년월일 1996. 6 .
제출자 서 산 시 장

의안 번호	93
----------	----

1. 제 정 이 유

- 소하천정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소하천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세수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점용구분에는 공작물의 설치·소하천부속물의 점용·유수의점용·토석사력의 채취등으로 구분하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하며, 월액으로 산정함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1월로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소하천의 점용구분에 따라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3조)

다.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등을 정하여 감면 규정을 둠(안 제5조)

라.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7조)

3. 참 고 사 항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서산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불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은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법제10조 또는 법제14조에의한 허가를 할때에는 하천법시행규칙 [별표4]허가 수수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서산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제2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등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금 등 산정 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의시가표준액(이하"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6/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1)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시가표준액의 5/100중의 저렴한 금액 (2)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100 다.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5/100 마. 아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시가표준액의 3/100
3. 소하천부속물의적용	○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 ³ /sec당 100,000원 또는 이론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액

구 분	산 정 기 준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용 위함 인수포함)</p> <table border="1"> <tr><td>- 관경</td><td>25mm/㎡</td><td>하</td><td>월액</td><td>5,000원</td></tr> <tr><td>- 관경</td><td>50mm/㎡</td><td>하</td><td>월액</td><td>20,000원</td></tr> <tr><td>- 관경</td><td>75mm/㎡</td><td>하</td><td>월액</td><td>30,000원</td></tr> <tr><td>- 관경</td><td>100mm/㎡</td><td>하</td><td>월액</td><td>50,000원</td></tr> <tr><td>- 관경</td><td>200mm/㎡</td><td>하</td><td>월액</td><td>60,000원</td></tr> <tr><td>- 관경</td><td>300mm/㎡</td><td>하</td><td>월액</td><td>80,000원</td></tr> <tr><td>- 관경</td><td>400mm/㎡</td><td>하</td><td>월액</td><td>110,000원</td></tr> <tr><td>- 관경</td><td>500mm/㎡</td><td>하</td><td>월액</td><td>140,000원</td></tr> <tr><td>- 관경</td><td>600mm/㎡</td><td>하</td><td>월액</td><td>190,000원</td></tr> <tr><td>- 관경</td><td>700mm/㎡</td><td>하</td><td>월액</td><td>250,000원</td></tr> <tr><td>- 관경</td><td>800mm/㎡</td><td>하</td><td>월액</td><td>300,000원</td></tr> </table> <p>지업취수 및 80l/㎡ 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p> <p>※ 등수인인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일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점용료 등 적용</p> <p>다. 농업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5~0.5m³/sec까지 연액 10,000원 - 0.5m³/sec 증가시마당 10,000원 가산 	- 관경	25mm/㎡	하	월액	5,000원	- 관경	50mm/㎡	하	월액	20,000원	- 관경	75mm/㎡	하	월액	30,000원	- 관경	100mm/㎡	하	월액	50,000원	- 관경	200mm/㎡	하	월액	60,000원	- 관경	300mm/㎡	하	월액	80,000원	- 관경	400mm/㎡	하	월액	110,000원	- 관경	500mm/㎡	하	월액	140,000원	- 관경	600mm/㎡	하	월액	190,000원	- 관경	700mm/㎡	하	월액	250,000원	- 관경	800mm/㎡	하	월액	300,000원
- 관경	25mm/㎡	하	월액	5,000원																																																				
- 관경	50mm/㎡	하	월액	20,000원																																																				
- 관경	75mm/㎡	하	월액	30,000원																																																				
- 관경	100mm/㎡	하	월액	50,000원																																																				
- 관경	200mm/㎡	하	월액	60,000원																																																				
- 관경	300mm/㎡	하	월액	80,000원																																																				
- 관경	400mm/㎡	하	월액	110,000원																																																				
- 관경	500mm/㎡	하	월액	140,000원																																																				
- 관경	600mm/㎡	하	월액	190,000원																																																				
- 관경	700mm/㎡	하	월액	250,000원																																																				
- 관경	800mm/㎡	하	월액	300,000원																																																				
5.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000m³~200,000m³까지 월액 20,000원 - 월 1,000m³ 증가시마당 50원 가산 <p>나. 기타 용수의 배수</p> <p>기타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담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000m³~200,000m³까지 월액 15,000원 - 월 1,000 증가시마당 50원 가산 <p>※ 월10,000m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6. 토석, 사력의 채취	○ 시장이 2개지역 이상에서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결정한다																																																							
8. 기타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별표 2]

점 용 료 등 감 면 기 준

(제5조 관련)

감 면 내 용	감 면 율
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100 %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위한 경우	100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 %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
5.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트지점용의 경우	100 %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
8. 기타 소하천등이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

1996. 6. 1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6.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6. 11
- 라. 상정일자 : 1996. 6. 1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윤병규)

가. 주요골자

- 점용구분에는 공작물의 설치,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유수의점용, 토석사력의 채취 등으로 구분하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월액으로 하며, 월액으로 산정함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소하천의 점용구분에 따라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3조).
-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개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등을 정하여 감면 규정을 둠(안 제5조).
-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본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하천을 점용하는 자들로부터 점용료등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증대및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법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근거로 설치하는 조례로서 관련법규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농업용수도 요금을 받는가?

답변) 1일 사용량 4천톤~4만톤이상을 사용하여야 년 1만원과 4천톤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가산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대상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문) 점용료 산정등의 기준은?

답변) 직할하천 및 준용하천의 기준은 준용하였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